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정일	1977. 12. 8.
개정차수	74차	최근 개정일	2018. 7. 12.

1977.12.08.제정
 1978.03.01.개정
 1980.04.08.개정
 1982.01.19.개정
 1987.02.04.개정
 1990.02.13.개정
 1991.09.12.개정
 1992.03.07.개정
 1996.03.01.개정
 1996.11.29.개정
 1997.04.15.개정
 1998.09.16.개정
 1999.03.26.개정
 1999.10.12.개정
 1999.11.26.개정
 2000.01.20.개정
 2000.04.21.개정
 2000.07.25.개정
 2001.04.04.개정
 2001.09.05.개정
 2002.11.21.개정
 2003.03.19.개정
 2003.06.27.개정
 2003.10.23.개정
 2004.04.09.개정
 2004.11.01.개정
 2005.04.01.개정
 2005.05.01.개정
 2005.12.19.개정
 2006.07.01.개정
 2006.09.20.개정
 2007.01.01.개정
 2007.02.01.개정
 2007.03.14.개정
 2007.08.13.개정
 2007.10.29.개정
 2007.11.28.개정
 2007.12.06.개정
 2007.12.21.개정
 2007.12.28.개정
 2008.03.26.개정
 2009.07.01.개정
 2009.08.20.개정
 2009.11.01.개정
 2010.08.30.개정
 2010.09.27.개정
 2011.05.23.개정
 2011.10.24.개정
 2011.12.19.개정
 2012.02.27.개정
 2012.05.21.개정
 2012.06.18.개정
 2012.07.22.개정
 2012.08.27.개정
 2013.02.18.개정
 2013.03.25.개정
 2013.04.22.개정
 2013.09.30.개정
 2014.03.27.개정
 2014.04.14.개정
 2014.04.30.개정
 2014.09.04.개정
 2014.10.29.개정
 2015.04.23.개정
 2015.05.27.개정
 2015.08.19.개정
 2015.09.17.개정
 2015.12.22.개정
 2016.02.18.개정
 2016.04.21.개정
 2016.10.20.개정
 2017.05.25.개정
 2018.02.02.개정

2018.03.29.개정
 2018.07.12.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개정 2012.2.27.>

1. 조선대학교
2. 조선간호대학교
3. 조선이공대학교
4.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5.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6.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7.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에 둔다.
<개정 2013.9.30.>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항 구분 개정 2013.3.25.>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07.11.28., 2009.7.1., 2013.3.25., 2013.9.3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28.>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9.>

③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14.10.29.>

1. 대학교·전문대학 -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이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10.29.>

1. 대학교·전문대학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07.1.1.]

제3절 삭 제 <2007.1.1.>

제13조 ~ 제21조 삭 제 <2007.1.1.>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포함)
단, 1명의 이사는 상임으로 할 수 있다.
2. 감사 2명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

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 2007.12.6.>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5.12.19.>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1.1.]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 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8>

[본조 신설 2007.1.1.]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개정 2007.12.28.>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8., 2012.2.27.>

1.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조선간호대학교 및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7.12.28.>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28.>

[본조 신설 2007.1.1.]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

③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1.1.>, <개정 2007.12.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동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2.19., 개정 2007.1.1.>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1.28.>

제27조(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무를 장리하고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 ②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7.11.28.>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항 이동 2007.11.28.>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를 겸할 수 없다.<항 이동 2007.11.28.>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7.1.1.>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1.>

③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3.25.>

제33조(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7.1.1.>, <개정 2007.11.28.>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8>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

권자가 이사회에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1.>

제3절 대학평의회 <절 신설 2007.1.1.>

제35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3(평의회의 구성) ①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6.>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동문 2명<개정 2007.12.6.>

②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또는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노동조합 또는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개정 2007.12.6.>

제35조의5(평의회 의장 등) ①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7(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4.10.29.>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3. 대학현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12.28>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업
2. 어업, 농업
3. 공업, 건설업
4. 기계제조, 프랜트 제작업 및 판매업
5. 시멘트, 석고제조 및 판매업
6. 부동산 임대업
7. 금융업
8. 증권 투자업
9. 의료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법인체로서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해 산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기관의 장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

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8.13., 2009.7.1.>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
 되 관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3., 2009.7.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40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07.1.1.>, <개정 2007.11.28.>

③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의 「재직 중인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03.6.27., 개정 2009.7.1., 2012.7.22.>

1. 교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조교수 : 3년

3. 삭제<2012.7.22.>

④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03.6.27., 2012.7.22.>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근무지, 소속기관(학과, 학부), 학사업
 무 수행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약정 : 교육, 연구, 봉사 등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⑤각급학교의 교원으로 보하는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하되, 의료원장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이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보직 임명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 ⑦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 ⑧ 삭제 < 2007.1.1.>
- ⑨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1.28.>
-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07.11.28.>

제40조의2(기간제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1.9.5., 2007.1.1.>

1. 교원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신설 2007.1.1.>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신설 2007.1.1.>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신설 2007.1.1.>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신설 2007.1.1.>
-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01.9.5.>
- ③중·고등학교의 출산휴가 및 병가대체를 위한 기간제교원 임면은 학교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1.9.5.>

제40조의3(교원 정년보장 심사) ①대학에 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정년보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교원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3.6.27.]

제40조의4(전형결과의 공개) ①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1.1.]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해야 한다.<개정 2001.9.5., 2005.12.19., 2007.1.1., 2007.11.28., 2009.7.1., 2013.3.25., 2014.10.29., 2015.12.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4.10.29.>

8. 관할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조선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의 진단에 의하여 명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병명 등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된 경우는 당해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할 수 있다.
- ③임면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4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1.1.>
10. 제41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1.1.>
11. 제4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노조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7.1.>

제43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③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4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연봉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비연봉제 교원의 동일 호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29.>

② 제4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③ 삭제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삭제>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01.9.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의2(당연 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개정 2015.12.12.>

[본조 신설 2013.3.25.]

제45조의3(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3.3.25.]

제45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①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제56조에 따른 파면·해임·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0.20.]

제46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44조 및 제45조 제4항의 봉급에 대한 범위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명예퇴직) ①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13.3.25.]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

제49조(인사위원회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 2007.3.14., 2012.7.22.>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처(실)장 및 병원장 등 교원의 보직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동의 및 의료원장의 보직 임면제청 시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고교의 경우]

1. 교원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정관 제40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평가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개정 2005.12.19., 2007.12.28.>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19.>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19.>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19.>
4.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19.>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조선간호대학교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6.10.20.>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

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교학처, 교무입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7.8.13., 개정 2009.7.1., 2016.4.21.>

-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규정)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09.7.1.]

[중전 제56조를 제56조의2로 이동 2009.7.1.]

제56조의2(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조 변경 2009.7.1.>

1.~2. 삭제

제57조(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10.29., 2016.10.20.>

1.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④ 삭제

⑤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항신설 2016.10.20.>

1. 외부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7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16.10.20.]

제58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28., 2009.7.1>

제60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10.20.>

제62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면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2.>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2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12.22.>

④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⑤징계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2.>

제62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3.25.]

제62조의3(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임면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2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22.]

제63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3.3.25., 2015.12.22.>

②제62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3.25.>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3.25.>

제63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20.>

제64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 제>

제66조 내지 제79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0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기술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10.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4.10.29.>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0.29.>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0.29.>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2014.10.2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2014.10.29.>
 8.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2014.10.29.>
-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기능직 및 고용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9.20.>
-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1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조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면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1.9.5.>

제8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6조(법인 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9.5., 2007.1.1.>

②법인팀, 감사관재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9.5., 2002.11.21., 2007.1.1., 2009.8.20., 2014.09.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제2절 대 학 교

제87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8조(학장, 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단, 정책대학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 경영대학원장은 경상대학장, 산업기술융합대학원장은 공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장, 디자인대학원장은 미술대학장, 임상약학대학원장은 약학대학장, 교육대학원장은 사범대학장이 겸직한다.<개정 2014.9.4., 2014.10.29.>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삭제

제89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조정실, 교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취업학생처, 입학처, 총무관리처, 인사혁신처를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09.7.1., 2009.11.1., 2014.09.04., 2014.10.29., 2016.4.21.>

②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팀, 평가분석팀을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09.11.1., 2014.9.4., 2014.10.29.>

③교무처에 학사운영팀, 교직원운영팀, 교수학습지원센터, 융복합교육센터, 교육평가관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수학습개발팀을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09.11.1., 2014.09.04., 2014.10.29., 2015.12.22., 2017.5.25.>

④연구처에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사업지원팀, 장비운영팀을 둔다. <항 신설 2014.10.29., 개정 2015.09.17.>

⑤취업학생처에 취업전략팀, 취업경력개발팀, 학생복지팀, 장학팀, 생활관운영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원스톱학생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창업교육센터를 둔다.<개정2004.11.1., 2006.7.1., 2007.12.21., 2009.7.1., 2014.3.27., 2014.09.04., 2014.10.29., 2017.5.25., 2018.2.2.>

⑥입학처에 입학팀, 입학사정관팀을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10.9.27., 2014.10.29.>

⑦ 삭제 <2004.11.1.>

⑧총무관리처에 총무팀, 재무팀, 자산관리팀, 시설·안전관리팀, 환경조경팀을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14.09.04., 2014.10.29.>

⑨ 삭제 <2014.09.04.>

⑩대외협력처에 홍보팀, 국제협력팀, 비서실을 둔다.<개정 2004.11.1., 2007.12.21., 2009.11.1., 2014.09.04., 2014.10.29.>

⑪인사혁신처에 교원인사팀, 직원인사팀을 둔다.<삭제 및 신설 2014.09.04., 개정 2016.4.21.>

⑫기획조정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학생처장, 입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총무관리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교수·부교수로, 인사혁신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각각 보한다.<신설 2007.12.21., 2014.09.04.>, <개정 2009.7.1., 2009.11.1., 2014.09.04., 2014.10.29., 2016.4.21.>

⑬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부실장을, 교무처에 교무부처장과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융복합교육센터장, 교육평가관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산학부처장을,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부처장을, 취업학생처에 취업지원부처장과 학

생지원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양성평등센터장, 원스톱학생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 대학일자리부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을, 입학처에 입학부처장을, 총무관리처에 총무관리부처장과 시설관리부처장을, 인사혁신처에 인사혁신부처장을 두고, 부처(실/본부)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융복합교육센터장, 교육평가관리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양성평등센터장, 원스톱학생상담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대외협력부처장, 취업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입학부처장, 총무관리부처장, 시설관리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각 실·처(본부)에 팀(비서실 포함)을 두고, 각 팀장(비서실장 포함)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12.21., 2009.7.1., 2009.8.20., 2009.11.1., 2013.2.18., 2014.3.27., 2014.09.04., 2014.10.29., 2015.12.22., 2016.4.21., 2018.2.2.>

⑭ 삭제 <2014.10.29.>

⑮ 제1항에서 제1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및 항 이동 2007.12.21., 2014.10.29.>

제90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의과대학, 공과대학에 부학장을,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 및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며, 센터장·부센터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미래사회융합대학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그 임명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4., 2007.12.21., 2014. 3.24., 2014.09.04., 2018.2.2.>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두고,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공학교육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2007.12.21., 2009.8.20.>

③ 대학원에 교학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2007.10.29., 2009.8.20.>

④ 교육대학원은 사범대학 교학팀, 정책대학원은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경영대학원은 경상대학 교학팀, 산업기술융합대학원은 공과대학 교학팀, 보건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교학팀, 디자인대학원은 미술대학 교학팀, 임상약학대학원은 약학대학 교학팀에서 각각 통할하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2005.12.19., 2009.8.20., 2011.10.24., 2013.9.30., 2014.09.04., 2014.10.29.>

⑤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교학팀을 두며,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학팀을 각각 겸무한다.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학팀장을 각각 겸직한다.<신설 2007.10.29.>, <개정

2009.8.20.>

⑥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항 이동 2007.10.29.>

제91조 <삭제>

제92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법인으로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4.9.]

제92조의3(특별사업기구) 대학교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7.1.]

제93조(중앙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관장·부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부관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2007.10.29., 2018.2.2.>

②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전반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11.1., 2009.8.20., 2014.09.04., 2014.10.29.>

④ <삭제><2018.2.2.>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0.29.>

제93조의2(정보전산원) ①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정보전산원에 정보관리팀, 정보개발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04.11.1.>, <개정 2007.12.21., 2009.8.20., 2014.10.29.>

제94조(의료원) ①대학교 산하 각 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할하기 위하여 조선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5.4.1.>

②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기구와 부속병원을 둔다.

1. 기획관리실

2.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개정 2005.4.1., 2005.12.19.>

3. 부속광양병원 <삭제 2001.9.5.>

4.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개정 2005.4.1., 2005.12.19.>

⑤기획관리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⑥기획관리실에 기획과와 의료정보과를 두며, 기획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의료정보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⑦제5항 내지 제6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병원) ①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5.4.1.>

②병원장은 병원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4.1.>

③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병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병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4.1.>

④병원에 기획실, 대외협력실, 의료질관리실을 두되,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의료질관리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기획실에 기획팀, 보건의료사업팀, 의료정보팀을, 대외협력실에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두고 대외협력팀에 국제진료센터를, 의료질관리실에 의료질관리팀을 두며, 대외협력팀장, 보건의료사업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기획팀장, 홍보팀장, 의료정보팀장, 의료질관리팀장은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하며, 국제진료센터장은 대외협력팀장으로 겸보한다.<개정 2005.4.1., 2007.8.13., 2011.10.24., 2014.4.30., 2016.2.18., 2018.3.29.>

⑤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간호부, 약제부 및 총무부를 두며,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간호부장, 약제부장, 총무부장은 4급 이상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간호부장과 약제부장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보한다.<개정 2005.4.1.>

- ⑥진료부에 진료각과, 분과, 각 실과 특성화센터를 두고 진료업무지원을 위해 진료지원1팀, 진료지원2팀, 진료행정팀, 법무팀, 의무기록팀, 영양팀, 진료비심사팀, 의공팀을 두되, 진료과에 소속되는 팀은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하며 진료각과장, 분과장 각 실장 및 각 특성화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진료지원부서 중 진료지원1팀장, 진료지원2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그 외 팀장은 해당분야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4.1., 2007.8.13., 2008.3.26., 2009.8.20., 2010.8.30., 2012.6.18., 2015.4.23., 2018.3.29.>
- ⑦간호부에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및 특수부서간호팀 및 수술간호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 간호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4.1., 2012.6.18.>
- ⑧약제부에 약무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 약무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4.1., 2007.8.13., 2015.4.23.>
- ⑨총무부에 총무팀, 구매팀, 재무팀, 원무팀, 보험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팀장은 기술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4.1., 2007.1.1., 2007.8.13., 2009.8.20., 2010.8.30.>
- ⑩교육연구부에 연구지원팀과 교육수련팀을 두며, 각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 2005.12.19., 2011.10.24.>
- ⑪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4.1.>

제95조의2 삭 제<2001.9.5.>

제95조의3(치과병원) ①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05.4.1.>

②병원장은 치과병원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5.4.1.>

③치과병원에는 진료부,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두며,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무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4.1.>

④진료부에 진료 각 과, 일차구강진료실, 각 센터를 두고 진료업무지원을 위해 진료지원1팀, 진료지원2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 일차구강진료실장 및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진료지원 1,2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 2012.5.21.(시행일 2012.7.22.), 2012.6.18.>

⑤총무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의4(수탁사업 운영) 삭제<2013.2.18.>

[본조신설 2012.8.27.]

제3절 전문대학

제96조(총장 등) ①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7.1.>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09.7.1>

③~④삭제

제97조(조선간호대학교 하부조직) ①조선간호대학교에 교학처, 산학협력처, 총무팀과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04.4.9., 2007.1.1., 2007.2.1., 2012.2.27.>

②교학처장과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처장이 겸임한다.<개정 2004.4.9., 2007.1.1., 2007.2.1.>

③교학처에 교학팀을 두며, 교학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산학협력처에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지원팀을 두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산학지원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 <개정 2007.2.1., 2015.4.23., 2015.8.19., 2016.10.20.>

④총무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7.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 2007.2.1.>

[본조 제목 개정 2012.2.27]

제97조의2(조선이공대학교 하부조직) ①조선이공대학교에 교무입학처, 기획협력처, 학생취업처, 총무처와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04.4.9., 2007.2.1., 2009.7.1., 2012.2.27., 2014.10.29., 2016.10.20.>

②교무입학처장, 기획협력처장, 학생취업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4.9., 2007.2.1., 2009.7.1., 2014.10.29., 2016.10.20.>

③교무입학처에 교무팀, NCS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입학홍보팀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팀장이 겸직한다.<개정 2003.10.23., 2007.2.1., 2009.7.1., 2014.10.29., 2015.5.27., 2016.10.20.>

④기획협력처에 기획평가팀, 산학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2.1.>, <개정 2009.7.1., 2014.10.29., 2016.10.20.>

⑤학생취업처에 학생취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학생취업센터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센터장이 겸직한다.<개정 2007.2.1., 2009.7.1., 2011.12.19., 2014.4.14., 2014.10.29., 2016.10.20.>

⑥총무처에 총무팀, 자산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7.2.1., 2009.7.1., 2016.10.20.>

⑦교무입학처에 입학홍보부처장을, 기획협력처에 산학협력부처장을, 학생취업처에 학생취업부처장을 두고,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신설 2011.12.19., 개정 2014.10.29., 2016.10.20.>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2.1., 항변경(기존 제⑦항에서 제⑧으로) 2011.12.19.>

[본조 제목 개정 2012.2.27.]

제98조(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6급 이상의 팀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2.6.18.>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7.1.>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9조 삭제 <2007.2.1.>

제99조의2(도서관) ①도서관에 도서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3.4.22.>

②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④ <삭제 2016.10.20.>

[본조 신설 2011.12.19.] [본조 제목 개정 2014.10.29., 2016.10.20.]

제4절 중·고등학교 <개정 2000.7.25.>

제1관 행정조직

제100조(교장 등) ①중·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01조(하부조직) ①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10.29.>

②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또는 7급으로 보한다.<개정 2014.10.29.>

③중·고등학교 행정조직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대우 사무직원 임용 및 근속승진제) ①중·고등학교 사무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에 제한 사유가 없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 사무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2.11.21.>

②대우 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0.29.>

③일반직[행정] 8급 및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 8급 이하 직원 중 승진소요기간 이상을 성실하게 장기 근속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상위 직급으로 근속 승진 임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다.<신설 2002.11.21., 2014.10.29.>

④근속 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는 정관의 정원 기준 외에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신설 2002.11.21.>

제101조의3(사무직원의 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10.29.]

제2관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2000.7.25.>

제102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해당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기타 학교 운영에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28.>

④ 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1인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항 이동 2007.12.28.>

제104조(위원의 선출 등)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07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09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1.9.5.>

제109조의2(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각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1.9.5.>

제5절 정 원

제110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와 병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10.29.>

제8장 보 칙

제11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광주광역시 소재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1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1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박 철 용	1912. 6. 14.	4년	광주부 궁동 31번지
이 사	염 세 열	1917. 1. 15.	4년	광주부 금남로 4가 53번지
이 사	오 석 표	1915. 1. 23.	4년	광주부 대인동 48번지
이 사	김 택 주	1910. 1. 20.	4년	광주부 서석동 391번지
이 사	문 병 권	1919. 6. 17.	4년	광주부 금남로 4가 206번지
이 사	최 정 기	1913. 4. 20.	4년	광주부 금정 211번지
이 사	정 홍 석	1903. 7. 21.	4년	광주부 명치정 4정목 55번지
이 사	한 규 중	1913. 7. 21.	4년	광주부 금동 181번지
이 사	이 은 태	1919. 4. 13.	4년	광주부 서석동 424번지
이 사	강 요 한	1915. 10. 10.	4년	광주부 동명동 143번지
이 사	최 윤 모	1917. 2. 11.	4년	광주부 대인동 17번지
이 사	서 정 열	1902. 7. 6.	4년	광주부 월산동 113번지
이 사	서 영 규	1903. 12. 5.	4년	광주부 장동 21번지
이 사	소 퇴 성	1915. 11. 5.	4년	광주부 산수정 479번지
이 사	문 종 구	1902. 1. 1.	4년	광주부 서석동 89번지
이 사	양 영 하	1906. 7. 8.	4년	광주부 황금동 27번지
이 사	박 동 수	1901. 8. 2.	4년	광주부 궁동 22번지
이 사	남 용 진	1897. 3. 20.	4년	광주부 금남로 4가 2번지
이 사	박 영 구	1914. 8. 18.	4년	광주부 궁동 31번지
감 사	김 쌍 봉	1919. 3. 7.	4년	광주부 궁동 31번지
감 사	이 명 효	1912. 3. 26.		광주부 불로동 153번지
감 사	김 중 순	1907. 10. 25.		광주부 궁동 31번지

부 칙 (1977. 12. 8 대학 1040-1847)
 이 정관은 1977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2.20. 대학 1040-294)

이 정관은 197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4.8. 대학 1042.3-339)

이 정관은 198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9. 대학 1042.3-111)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 의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대학 교육기관의 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미 임명된 날로부터 기

산 한다.

4.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대학 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6.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7.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87.2.4. 대학25422-184)

이 정관은 198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2.13. 대학25422-150)

이 정관은 199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9.12. 대학 25422-916)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규정된 임기에 의하고,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4.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5.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2.3.7. 대학 25422-39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2.29. 대행 81422-445)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9. 대학81422-522)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휴직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휴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기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적용한다.
3. (징계위원회 및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중인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보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4.15. 대학81422-487)

이 정관은 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6. 대학81422-1165)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조선대학교 병설 간호전문대학, 병설 공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3.26. 대학81422-425)

이 정관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2. 대행81422-269)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6. 대행81422-541)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 대행 81422-92)

이 정관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21. 대행81422-669)

이 정관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0.7.25. 대행81422-12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3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2001.4.4. 대재81422-4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5. 대재81422-105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1. 대재81422-149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9. 대재81422-4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27. 대재81422-89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6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3. 사학81422-147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9. 사학지원과-7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5. 사학지원과-47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0. 사학지원과-153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6. 사학지원과-26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사립대학지원과-20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6. 사립대학지원과-369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0. 사립대학지원과-53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사립대학지원과-688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1. 사립대학지원과-75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4. 사립대학지원과-12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3. 사립대학지원과-36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29. 조선법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8. 사립대학지원과 제537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6. 사립대학지원과 제552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조선법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 제2절 대학교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사립대학지원과 제590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6. 조선법 제8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 사립대학지원과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직 전공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1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7.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13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조선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조선간호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조선이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조선이공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5.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 한 전임강사는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부 칙(2012.6.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3.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60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 한 전임강사는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부 칙(2012.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원 홍보실장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홍보실장은 개정 정관에 따른 대외협력실장으로 본다.

부 칙(2014.9.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2.28.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제2절은 2015. 2. 28.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단위: 명)

법인·대학별	직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9급 (부서기보)	합계
	직종·	직군										
법인	일반직(행정)		1	1	1	3	2	1	1	1		10
	일반직(기술)		-	-	1	1	-	-	-	1		2
	일반직(관리운영)		-	-	-	1	1	-	-	1		2
	소 계		1	1	2	5	3	1	1	3		14
조선대학교	일반직	행정직	4	12	35	66	80	80	31	44		367
		기술직	-	3	9							
		관리운영직	-	-	-							
	별정직(상당)		-	-	1	2	-	-	-	-	-	3
	소 계		4	15	45	71	80	80	31	44		370
조선간호대학교	일반직	행정직	-	1	1	2	2	2	2	1		11
		기술직	-	-	-	-	1	-	1	1		3
	소 계		-	1	1	2	3	2	3	2		14
조선이공대학교	일반직	행정직	1	1	4	5	9	6	3	5		34
		기술직	-	-	1	3	2	2	2	1		11
	소 계		1	1	5	8	11	8	5	6		45
총 계			6	18	53	86	97	91	40	55		446

개정: 법 인<2007.8.13., 2009.8.20., 2013.4.22., 2015.12.22.>

조선대학교<2002.11.21., 2004.11.1., 2005.4.1., 2005.5.1., 2005.12.19., 2006.9.20., 2007.2.1., 2007.8.13., 2009.11.1., 2011.5.23., 2015.9.17., 2018.7.12.>

간호대학교<2007.2.1., 2016.10.20.>

이공대학교<2007.2.1., 2009.8.20., 2011.12.19., 2012.6.18., 2013.4.22., 2016.10.20.>

<별표2>

의료원, 조선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단위: 명)

직종·직급별		병원·의료원	의료원	조선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일반직	2급		—	1	—
	3급		—	2	1
	4급		2	8	2
	5급		2	13	2
	6급		5	24	4
	7급		6	24	4
	8급		3	16	3
	9급		1	4	1
소 계			19	92	17
의료직	임상전문교수(별정직2급상당)		—	3	2
	임상전문교수(별정직3급상당)		—	7	3
	전임의(별정직 4급상당)		—	50	10
	전공의(별정직 5급상당)		—	183	100
소 계			—	243	115
연구직	임상심리사(별정직 5급상당)		—	1	—
	의학물리사(별정직 6급상당)		—	1	—
	의학물리사(별정직 7급상당)		—	1	—
	심리수련생(별정직 6급상당)		—	1	—
	심리수련생(별정직 7급상당)		—	1	—
	불임연구원(별정직 7급상당)		—	1	—
	임상연구원(별정직 6급상당)		—	1	—
소 계			—	7	—
기술직	약사	3급	—	1	—
		4급	—	2	—
		5급	—	6	—
		6급	—	7	1
		7급	—	12	1
		소 계	—	28	2
	간호직	2급	—	1	—
		3급	—	2	—
		4급	—	10	—
		5급	—	32	1
		6급	—	67	1
		7급	—	139	1
		8급	—	496	1
		9급	—	40	—
	소 계		—	787	4
	보건직	3급	—	2	—
		4급	—	6	2
		5급	—	17	2
		6급	—	27	6
		7급	—	28	8
		8급	—	42	5
		9급	—	4	1
	소 계		—	126	24
	의공·시설·환경	4급	—	2	—
		5급	—	3	1
		6급	—	3	1
		7급	—	3	1
		8급	—	2	1
9급		—	2	1	
소 계		—	15	5	
소 계		—	—	956	35

기 능 직	5급		1	
	6급	-	8	2
	7급	-	24	6
	8급	-	33	4
	9급	1	27	1
	10급	1	1	1
소 계		1	94	14
고용직	1종 고용직	-	1	0
	고충직	-	-	0
소 계		-	1	0
총 계		21	1,393	181

개정: 병 원<2005.4.1., 2005.12.19., 2007.1.1., 2007.8.13., 2008.3.26., 2009.8.20., 2010.8.30., 2011.10.24., 2012.6.18., 2014.4.30., 2015.4.23., 2016.2.18., 2017.5.25., 2018.3.29., 2018.7.12.>

치과병원<2005.4.1., 2007.8.13., 2008.3.26., 2009.8.20., 2011.10.24., 2012.6.18., 2017.5.25.>

<별표3>

중·고 등 학 교

(단위: 명)

직종·직급별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일 반 직 (행정)	5급		1	1	-	-
	6급		1	1	1	1
	7급		1	1	1	1
	8급		-	-	-	-
	9급		-	-	-	-
소 계			3	3	2	2
일 반 직 (관리운영 또는 기술)	7급					
	8급					
	9급		3	3	2	2
	10급					
소 계			3	3	2	2
총 계			6	6	4	4

<개정 2014.10.29.>

작성자 : 법인사무처 법인팀 조 은 정 (☎062-230-6021)
 확인자 : 법인사무처 법인팀장 정 권 철 (☎062-230-6025)